#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

2017. 12. 12.

일자리위원회·관계부처 합동

# ||| 목 차 |||

I. 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II. 건설산업 고용실태 ······· 2
Ⅲ. 정책 추진방향4
IV.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······ 5
1. 임금보장 강화 5
2. 근로환경 개선 10
3. 숙련인력 확보 13

## Ⅰ. 추진배경

- □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(185만명, 전체 취업인원의 7.0%, '16)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
  - \* 업종별 취업자(만명, '16): (총취업자) 2,624 (제조) 448, (건설) 185, (운수) 141
  - 그러나, 건설업 취업자의 73.5%를 차지하는 건설근로자(136만명, '16)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음
  - **청년세대의 유입**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**고령화**가 진행중(40대 이상 취업비중 84% vs 전 산업 63%, '16)
- □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**임금체불・삭감**, **열악한 근로여건** 등으로 **건설 일자리**를 **3D 일자리**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
  - **다단계 도급구조**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**건설근로자**에게 전가 하는 **잘못된 관행**\*이 일상화
    - \*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과 불법외국인력 고용으로 만회
  - 비정규직 고용\*으로 사회보장, 직업훈련 등에서는 소외되는 반면, 장시간 옥외근로와 빈번한 산재로 노동강도는 높은 실정
    - \* 건설업 등록요건상 기능인력 보유기준이 없어 상시고용업체가 거의 없음
- □ 그간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숙련 건설인력 육성을 위해 체불해소 등 일부 제도개선\*을 추진한 바 있으나,
  - \* ('11)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, ('12) 체불사업주 명단공표제 도입 등
  -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제고, 근로환경 개선, 직업전망 제시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・근본적 처방에는 한계
- ⇒ 그간 노사정 협의(일자리위 건설분과\*, 8차례 논의)를 토대로 도출한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'질 좋은 건설 일자리'를 적극 창출
  - \* 국토부, 기재부, 노동부, 건설협회, 전문건설협회, 한노총 민노총 등

## Ⅱ. 건설산업 고용실태

#### ① 건설업 고용현황

- □ (고용규모) 건설업 취업자수는 최근 건설경기 호조에 따라 '13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중이나 비정규직\*이 많아 경기변동에 민감
  - \* 총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('16): 51.9%(전 산업 평균 32.8%)

【건설업 고용 현황 (만명, 통계청)】



【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 (%, 통계청)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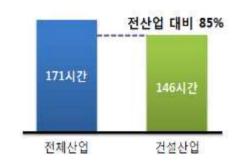


□ (임금 및 근로시간) 동절기 등에 소득이 줄어들고 다단계 도급과정 에서 임금이 삭감되어 소득수준은 낮고 근로시간은 짧은 측면

【건설업 월평균 임금 비율 ('16, 통계청)】



【건설업 월평균 근로시간 ('16, 통계청)】



- □ (외국인력) 낮은 소득수준, 비정규직 중심 고용관행 등에 따라 내국 인력 취업이 줄면서 합법\*・불법 외국인\*\* 취업규모가 모두 확대
  - \* 합법 건설근로자(만명): ('14) 4.7→ ('15) 4.9→ ('16) 5.1
  - \*\*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(만명, 산업인력공단 추정): ('14) 21.1→ ('16) 22.4

#### [2] **문제점**

#### ◈ 반복되는 체불로 임금보장이 미약하고 사회보장에서도 소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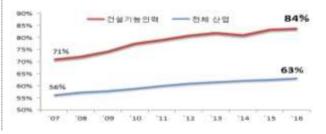
- 일부 건설업체의 **공사대금 목적외 사용**, 2~3개월치 임금을 사후 지급하는 유보임금 관행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임금체불이 빈번
  - \* '16년 기준 전 산업 대비 건설업 체불액 비중은 16.6%(2,366억원)이나 매출액 비중은 6.0%(162조원)로 산업규모에 비해 체불액 과다
- 타 업종에 비해 국민연금, 건강·고용보험 적용이 미흡하고, 건설 현장은 탈의실,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근로환경도 열악

#### ◈ 청년층의 취업기피와 빠른 고령화로 산업 생산기반 약화

- 30대 이하 청년근로자 비중감소로 **향후 숙련인력 수급차질\*** 전망
  - \* 건설 숙련인력 수급전망(고용부): ('14) △4만명→ ('19) △14만명

【연령별 건설근로자 비율(%, 통계청, '16)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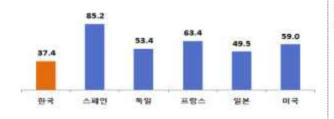
60대 이상 8.8% 15.3% 50대 34.1% 38.1% 40대 34.5% 30.3% 30대 이하 22.6% 16.3% 2010년 2016년 【40대이상 취업자 추이 (%, 통계청, '16)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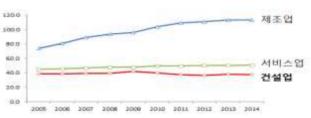


#### ◆ 낮은 일자리 질과 신규인력 진입부진으로 노동생산성도 저하

【건설업 노동생산성(천\$, 생산성본부, '14)】

【업종별 노동생산성(천\$, 생산성 본부, '14)】





⇒ 건설업체의 숙련인력 구인난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의 일자리 개선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필요

## Ⅲ. 정책 추진방향

#### 비 전

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일자리 창출

#### 3대 추진목표

#### 10개 세부과제

#### 임금보장 강화

- ① 궁궁궁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
- ② 임금지급보증제 도입
- ③ 적정임금제 추진

#### 근로환경 개선

- ④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
- 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
- ⑥ 설계·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질 개선

### 숙련인력 확보

- ⑦ 기능인 등급제 도입
- ⑧ 전자카드제를 통한 경력관리 기반구축
- ⑨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양성체계 확립
- ⑩ 불법외국인력 퇴출 및 노무관리 책임강화

**10대 과제**를 중심으로 **건설 일자리 개선**을 추진하면서 **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**을 위한 **산업경쟁력 강화** 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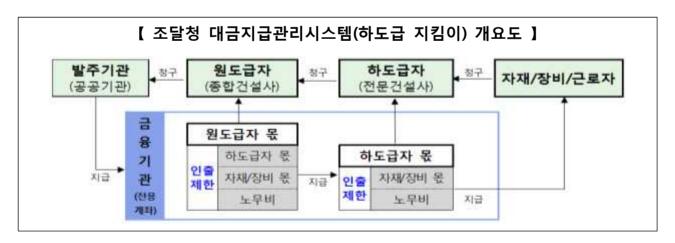
## Ⅳ.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

## 1

## 임금보장 강화

#### ①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

- □ (현황)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□ 그가 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
  - \* 노무비 구분관리제 도입('12), 매년 설ㆍ추석명절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등
  - 제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**공공공사**\*에서도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**거설사**의 **임금유용**을 원천차단하는 **근본적 대책** 필요
    - \* '17년 추석, 국토부 및 산하기관 현장 전수조사 결과 임금 체불액은 106억원
- □ (**개선**)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**발주자**가 **임금**,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「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<sup>\*</sup>」을 전면 확대
  - \* 건설사가 임금,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(중기부, 조달청, 서울시 등에서 개발·보급 중)



#### ◆ 국토부 공사에 전면시행 → 전체 공공공사에 의무화

- ① (1단계) 대책발표 즉시, 행정지도를 통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 현장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전면 적용 착수('17.12~)
  - \* '17.10월 현재,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의 17.6%에 기시행중(366개 현장)

- 신규공사는 입찰 공고문에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임을 명시하고, 기존 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 변경 통보(발주자 → 건설사)
- ② (2단계) '18년중 모든 공공공사(5천만원 미만 소액공사, 30일 이내 단기 공사 제외)에 의무화(건설산업기본법·전자조달법 개정안 제출, '18.2)
  - \* 건산법: 건설사의 공공공사 대금 유용금지, 시스템 적용 수용의무 부과 전자조달법: 공공발주자의 인출제한 등 전자적 시스템 사용의무 부과 등
  -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인출제한 등 제반요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,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제화
  - 법개정 전에도 시스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\* 강화
    - \*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가점을 현행(0.2~0.5점)보다 상향하는 방안 검토

#### ※ 민간공사: 원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임금직불을 적극 장려

- 원도급사가 **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**과 유사한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**인정**되는 **시스템**(예: 노무비 닷컴)을 활용 시,
-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원도급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과의 협의·검증을 거쳐 인정·고시
- 시스템 활용실적(공사현장 적용비율 등)에 따라 **상호협력평가 우대**\*를 통해 **공공 입찰시 가점부여**('18.2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 → '19년 적용)
  - \*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지원실적 등을 업체별로 평가(국토부, 매년) →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공공공사 사전적격성심사(PQ)에서 가점 부여

#### 2 임금지급보증제 도입

- □ (**현황**) 건설사 부도·파산, 공사대금 수취 후 고의잠적\* 등으로 인한 체불발생시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한 사후 구제장치 미흡
  - \* [사례] 인천시 상가신축 현장의 하도급사인 ○○건설은 근로자 100여명분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였으나 원도급사는 건설근로자 집단항의에도 불구, 이미 하도급사에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며 뒷짐

- 全 산업 차원의 체불임금 구제를 위해 **소액체당금 제도**\*를 운영중 (고용부)이나 **건설산업**의 특성상 활용에 한계
  - \*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400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거쳐 지급하는 제도로 통상 7개월 내외 소요
- 건설근로자 평균임금\*을 고려시, 보장범위가 협소하고 긴 지급소요 기간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생계곤란이 장기화될 우려
  - \* 3개월 체불시, 약 1,000만원 보전 필요(동절기 등 제외 월평균 임금: 331만원)
- □ (개선) 체불피해 건설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사후구제를 위한 임금지급보증제 도입(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제출, '18년중)
  - (대상공사) 일부 소액공사\*를 제외한 모든 공공·민간공사(착공전 까지 보증가입 후 발주자에게 제출,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부과)
    - \* 건산법 적용이 제외되는 5천만원 미만 종합공사. 15백만원 이하 전문공사 등
  - 공공공사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의무적용에도 불구, 건설사 부도· 파산시 건설근로자 임금의 압류 가능성이 있어 적용 불가피
  - (보장한도) 1,000만원(건설근로자 3개월치 평균임금 상당액)
  - (보증운영 기관) 전문건설공제조합, 건설공제조합\* 등
    - \*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도 보증가입 의무화
  - (보증수수료) 공사원가\*에 반영하여 공공·민간 발주자가 부담
    - \* 공사규모. 공종별 직접노무비 비중 등을 감안하여 반영비율 고시(국토부)
    - \*\* 체불이력 업체는 보증료 대폭할증, 보증가입 거절을 통해 영구퇴출도 유도
  - (지급절차) 체불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관계 존재 및 체불 금액을 확인받아 보증기관에 제출시 지급(2개월 내외 소요예상)
- ※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여부·시기·범위 등은 **체당금제도 개편방안** (고용부)\*과 연계하여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검토
  - \* 법원 확정판결→ 노동관서 체불사실 확인으로 대체하여 현행 7개월 내외인 소요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추진 등(일자리위 일자리로드맵 발표, '17.10)

#### ③ 적정임금제 추진

- □ (현황) 원도급사→하도급사→십·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당연시
  - 노무비 쥐어짜기를 통한 **저가수주**, 십반장의 **중간착취**\* 등에 따른 임금수준 하락은 내국인의 **건설업 취업기피**의 주된 원인
    - \* [사례] 이○○는 박△△ 팀장의 소개로 ◇◇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체 □□와 일당 12만원에 근무하기로 했으나, 팀장은 실제 □□로부터 14만원을 받고 2만원을 가로챈 뒤 이○○에게 12만원만을 지급, 이를 항의 하자 박△△팀장은 이○○를 8일 만에 해고
  -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에 따라 **내국숙련인력 부족**을 **불법 외국인력**으로 대체하는 **악순환** 발생
- □ (개선)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

### 시범사업 산업영향, 국가재정\* 등을 감안, 시범사업 우선추진

- \* 공공공사(연간 40조원 내외)에 전면시행시 연간 2조원의 공사비 증가 예상
- (사업대상) 발주물량이 많고 사업관리 경험이 풍부한 LH, 도공, 철도공단, 수공 소관 10개 내외 현장을 매년 선정, 2년간 실시
  - \* ('18) 대형업체가 참여하는 종합심사낙찰제(300억원 이상) 현장 10개소 → ('19)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적격심사낙찰제(300억원 미만) 현장 10개소 내외
- (사업방식) 건설업체는 발주자가 고시한 임금(시중노임단가\*) 이상을 의무지급하되, 2개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·시행
  - \* 건설협회가 조사·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평균임금으로 공공발주기관 에서 공사가격 산정기준으로 활용중
- 발주자가 **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**을 확인(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)
- 시범사업 기간 중 사업모델별로 건설근로자의 소득, 공사비, 노동 시가 중감 등 시행성과를 비교평가

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방식 비교 】						
방식	(1안) 노무비 경쟁 방식			(2안) 노무비 비경쟁 방식		
입찰 방식	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등	× <b>낙찰률</b> + α α : 적정임금 시행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낙찰률에 반영		재료비 경비 이윤 등	× 낙찰률	
				노무비	] → 경쟁제외	
공사비	• 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 (입찰 시 확정)			• 노무비를 제외한 입찰금액 + 실제 지급한 노무비(준공시 확정)		
노무비 관 리	• 다른 비용과 노무비를 함께 관리 (발주자는 노무단가 준수만 확인)			• 다른 비용과 노무비를 구분관리 (노무비는 업체 청구에 따라 지급)		
장 점	•기술경쟁을 통한 공사비 절감가능			• 노무비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여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가 큼		
단 점	• 건설업체가 인력투입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일 가능성			• 공사비 증가폭이 크고 건설업체의 노무비 허위청구도 우려		
공 통 사 항	•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,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단가 지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,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등을 함께 적용					

- (인프라 구축)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,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전면개편 추진('18~'19)
- 직종별 평균임금 → 근로자의 경력・자격 등을 반영, 세분화
- 사용자단체(건협) → 중립적·객관적 기관\*이 조사·발표
- \* (예) 전문기관(국토硏, 건기硏 등) 산정 또는 노사정 공동조사위원회 심의 등

## 제도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'20년부터 시행\*(건고법 등 개정)

- \* 시범사업 성과평가('18 $\sim$ '19)  $\rightarrow$  제도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T/F 구축('19.上)
  - →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건고법, 계약법령 등 개정완료('20.上)

#### □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

- □ (현황)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 일용직 근로자로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낮고 노후보장이 미흡하며 현장 근로여건도 열악
  - ① 他 업종에 비해 국민연금·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요건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률\*이 저조
    - \* '16년 기준 직장가입 건설근로자는 전체의 15.3%(타 비정규직 평균: 41.9%)
  - ② 65세 이상 건설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해 **퇴직공제제도**\*를 운영중이나 **납입액이** 작고 **적용공사**가 **제한**되는 등 **실효성 부족\*\*** 
    - \* 일정 공사(공공: 3억원, 민간: 100억원 이상)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해 1일당 4,200원을 건설사가 근로자공제회에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('98~)
    - \*\* [사례] 10년간 현장근무한 경우, 퇴직공제 수령액은 약 1,000만원
  - ③ 1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휴게실, 탈의실,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 준수율이 낮고 기준 세부화도 필요
- □ (개선)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도 개선
  - ① (사회보험)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·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 (20→ 8일, '18년말)에 따른 후속조치\* 실행
    - \* 공사원가 반영요율 인상(2.5→4.5%), 민간공사 납부확인제(감리) 도입('18.下)
  - ② (**퇴직공제**) **납입액·대상공사**를 지속 확대(건고법 시행령 개정, '18.上)
    - 日 **납입액**을 **5천원**으로 인상하고 **납입한도액**도 현행 5천원→ **1만원**으로 인상(실제 납입액도 단계적으로 상향, 발주자 납부방식도 검토)
    - 대상공사는 공공은 3→ 1억원 이상, 민간은 100→ 50억원 이상까지 확대('19년중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등 대상 공사 지속확대)
  - ③ (현장복지) 편의시설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화장실· 탈의실 성별구분 등 설치기준 세분화(건고법 시행규칙 개정, '18.上)

#### ②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

- □ (현황)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다단계 도급구조의 말단에 위치하여건설근로자와 유사하게 임대료 체불 등 각종 부조리에 노출
  - \* 전문업체와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체 중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1인 사업자(건설기계 1대 소유, 본인운전)는 13만명(전체의 약 30%)
  -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**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제도**\*를 운영중이나 전문업체의 **보증가입**이 **저조**(10% 내외 추산)하여 대금보호에 한계
    - \* 전문업체가 건설기계대여계약 체결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단기임대 등을 사유(7일 미만이 30%)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서 발급 회피
  -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시, 체불에 따른 **지연이자 지급규정**이 없어 관행적으로 **대금을 지연지급**하는 경향
  - \*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서 지연이자제 운영중(연 15.5%)
  - 1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근로자와 근로형태가 유사하나 **퇴직 공제 가입대상**에서 **제외**되어 노후보장도 미흡
- □ (개선)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장을 강화(건산법 개정안 제출, '18.2)하고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가입 허용(건고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)
  - ① (보증방식 개편) 현행 계약건별 개별 보증방식을 원하도급 업체별 공사현장 단위로 묶어서 보증하는 방식(근보증)으로 개편
    - \* 해당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가 임대하는 모든 건설기계의 임대료를 일괄보증
  - ② (퇴직공제)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되도록 특례부여
  - ③ (처벌강화)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처벌을 하도급 대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 수준\*으로 강화
    - \* 과징금: 2천만원→ 4천만원 / 영업정지: 1개월→ 2개월
  - ④ (지연이자제 도입) 하도급대금 수준의 지연이자 의무 부과

#### ③ 설계·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질 개선

- □ (현황) 설계·엔지니어링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다양한 불공정 관행으로 일자리 질이 열악하고 청년충 취업\*이 감소중
  - \* 29세 이하 청년 엔지니어: ('06) 10,708명→ ('14) 3,961명
  - **턴키, 민자** 등 설계사·시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 사업은 **설계비 미지급** 등 **시공사**의 횡포\*에 노출
  - \* [사례] △△ 철도공사 민자입찰에 참여한 A시공사는 B설계사에 구두로 설계를 맡기고, 민자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설계사가 지출한 설계비 미지급
  - 현행 **기술용역 입찰제도**는 가격경쟁 중심으로 저가수주로 인한 적정대가 미확보로 산업전반의 **임금수준\***이 낮은 상황
    - \* 엔지니어링 상위 11개사 평균연봉: 4,100만원(10대 건설사의 54%)
- □ (개선) 시공사 갑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기술력 중심 입찰제도 도입으로 설계 · 엔지니어링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
  - ① (턴키공사) 입찰 시 설계-시공사간 계약서를 제출받아 발주자가 시공사의 적정 설계비 지급여부를 확인('17.12 시행)
    - 시공사-설계사의 책임없이 발생한 추가비용\*의 미지급, 세부 계약 조건을 입찰참여 후 공지하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
    - \* 민원,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공기연장 발생시 추가비용 청구제한 등
  - ② (민자사업) 시공사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민자사업자 선정 평가시, 적정 설계대가 지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ㆍ평가
    - \* 민자사업 제안서 제출시. 설계대가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('18.1)
  - ③ (입찰제도 개선) 설계·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**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, 적정대가 확보를** 통해 **청년인재 취업 촉진**(국가계약법·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, '18.上)
    - \* 건설공사는 저가낙찰에 따른 폐해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 심사낙찰제를 旣시행중('16)

#### ① 기능인등급제 도입

- □ (**현황**) 건설근로자는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 종사하여 숙련도가 향상 되어도 **직위상승, 임금수준 향상** 등 **적절한 보상**이 부족한 상황
  - 청년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**근로경력과 기술 수준**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**명확한 직업전망**을 제시할 필요
- □ (개선)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(건고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)하고 등급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
  - ① (도입기반 마련) 건설근로자공제회, 고용보험공단, 인력관리공단 등으로 분산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공제회로 일원화('18)
    - 경력, 자격, 훈련정도 등을 반영한 **직종별 등급 분류체계**\* 마련('19)
      - \* (현행) 건설근로자공제회(433개), 고용보험(139개), 인력공단(109개)으로 분산 → (개선) 단일기준으로 통합(예: 국가직무능력 표준체계, 품셈기준 등)
  - ② (인센티브 부여) 건설업 등록기준,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하여 우수기능인력의 정규직 채용 등 고용안정을 유도 (건산법 등 관계법령 개정, ~'20)
    - \* (예) 건설업등록기준: (현행) 기술자 보유만 의무화→ (개선) 기능인 보유 추가 현장배치 기술자 기준: (현행) 기술자 배치만 인정→ (개선) 기능인 배치 허용

#### ② 전자카드제(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)를 통한 경력관리 기반구축

- □ (현황)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의 출결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・관리하기 곤란
  - 건설업체에 의한 **사회보험 고의누락**, 임금편취 목적의 **공사비 허위청구** 등 각종 부조리에도 취약

- □ (개선) 전자카드, 지문인식 등을 통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\*을 건설현장에 도입, 경력관리를 체계화하면서 각종 부조리도 예방 (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단말기 설치비용 등은 발주기관에서 부담)
  - \* 고용부 주관으로 LH 등 36개 공공공사 현장에 시범사업 추진중('15.9~)
  - ① **관리정보 체계화\***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('18.上)하여 국토부 소관 **300억원 이상 신규발주 공사**에 선도시행('18.下)
    - \* (예) 퇴직공제,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정보, 근무기간, 수행공종 등 경력정보
  - ② **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카드제 적용**을 **의무화**('18년 건고법 개정→ '19년 시행)하고 향후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**100억 이상**으로 확대

#### ③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건설인력 양성체계 확립

- □ (현황)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상, 개별 건설업체는 건설근로자 양성에 무관심하여 인력소요에 비해 교육훈련기관\*이 부족
  - \* 건설근로자 전문양성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(연 300명 내외 기능인력 배출) 1개소에 불과
  - 공고\*, 폴리텍대학 등의 건설교육 프로그램도 줄어드는 추세
    - \* 공업계 고등학교 건설관련 학과 정원: ('99) 15,670명→ ('15) 3,193명
- □ (개선) 상시고용이 드문 건설업 현실을 감안, 건설업체가 아닌 건설 산업계 차원에서 교육・훈련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
  - ① (거점 훈련기관 지정·운영) 인력 수요가 많은 **수도권에 사업자**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**거점훈련기관<sup>\*</sup> 선정**(1개소) 추진('18.下)
    - \* 훈련시설 증ㆍ개축비용, 기자재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(고용보험기금)
    - 운영실적을 보아가며 **타 권역**으로 **단계적으로 확대**('19~'20)하면서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**훈련기관 신설**도 검토
  - ② (프로그램 확충) 건설기능향상 훈련규모를 늘리고(8,000→ 12,000명) 하고 **직종혼합**(예: 조적+타일)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(~'20)

#### ④ 불법외국인력 퇴출 및 노무관리 책임 강화

- □ (현황) 임금체불, 불법외국인력 고용, 재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 노무행위가 빈번히 발생중이나, 단속이 부진하고 처분체계도 미흡
  - 특히, 공공입찰과 무관한 **하도급업체**는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고 **포괄적 관리책임**을 지는 **원도급사는 처분근거 미비**
- □ (개선) 불법체류 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하고 하도급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원도급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(건산법 개정안 제출, '18.2)
  - ① (불법외국인력에 대한 단속강화) 건설업종 불법외국인력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(특별단속지역 지정 등)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최소화
    - 정부합동 집중단속기간 연장 및 단속 참여기관 · 인원 확대\*\*
    - \* 年 20주→ 22주 / 법무·고용부·경찰·해경(340명)→ 국토부 포함(400명)
    -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범칙금\*을 강화하면서 단속인력 증원 등 외국인력 관리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
    - \* 고용인원(1~10명) 및 기간별(3월~2년) 범칙금 기준 개선(출입국법령 개정)
    - 전자카드제\* 확대 병행으로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근로를 차단
    - \*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 DB와 법무부·고용부 외국인 등록정보를 연계
  - ② (하도급업체 불이익 강화) 임금체불, 불법 외국인고용 등 노동관련 법령 위반 하도급사는 공공공사 하도급을 일정기간(예: 2년) 금지
  - ③ (원도급업체 책임강화) 하도급자의 노동관련 법위반행위 발생시, 원도급업체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노무관리 평가제\* 도입('18)
    - \* 하도급자 행정처분에 대해 원도급사 귀책사유(고의·과실)가 있으면 벌점을 부과하고, 벌점이 누적되면 과태료→ 과징금→ 영업정지 등 원도급사 처분
  - ④ (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) 불법하도급 2진 아웃제(7년 2회→ 등록 말소)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 발생시, 원도급사의 처벌\*도 강화
    - \* (현행) 지시·묵인시 과태료 처분 → (개선) 관리소홀 포함, 과징금으로 상향

## ♡.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

#### □ 고용우수 건설업체 인센티브 강화

- ① (**수주기회 확대**) 정규직 채용 확대 등 **고용실태**를 평가하여 **우수** 기업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('18년 도입→ '19년 시행)
  - \* (예) 청년층 정규직 채용규모 등이 증가된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사로 선정시, 해당 원도급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가점 부여 등
- ② (중소건설업체 혁신성장 지원) 일자리 창출실적이 우수한 우량 중소업체에 대해 컨설팅 바우처\* 지원('18년말 시행)
  - \* (英) 시공관리, 공법 자문 등 / (日) 고용관리 어드바이저 파견ㆍ컨설팅
  - 공모를 거쳐 중소건설기업 선정(정부·건설단체 합동심사)→ (가칭) 혁신성장 컨설팅 바우처(기술·노무관리·경영회계 등) 지급
  - \* 우선 산업계 재원(공제조합 등)을 활용하여 年 20개 내외 업체를 지원 검토

#### 2 적정 공사비 확보

 ○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건설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마련(기재부·국토부 등 TF 구성, '18.2→ '18.下 확정)

#### • 주요 검토과제(예시)

- ① 표준시장단가 등 건설공사 원가산정기준 개선
- ②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마련
- ③ 공공기관 부당특약(물가상승분 미반영, 대가없는 추가업무 지시 등) 시정

#### ③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

- 업역규제 완화,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, 설계·엔지니어링 기술역량 강화 등을 위한 **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**\* 마련('17.12~'18.1월중)
  - \* IT·건설간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,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공사 설립, 공공공사 3차원 설계 플랫폼(BIM) 적용 활성화 등

## 과제별 세부추진계획

	세부 과제	조치사항	추진시기
1.	임금보장 강화		
(1)			
	① 국토부 공사에 전면시행	지침시달	′17.12
	②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	건설산업기본법, 전자조달법 개정	'18.2 (법안제출)
	③ 민간공사 임금직불 장려	상호협력평가 개정	′18.2
(2)	임금지급보증제 도입	건설근로자법 개정	'18년중 (법안제출)
(3)	적정임금제 추진		(00 110)
	① 시범사업 및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선	사업계획 수립시행	′18 ~ ′19
	② 적정임금제 제도화	건설근로자법 개정	′20
2.	근로환경 개선		
(1)	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		
	① 사회보험 가입요건 확대관련 후속조치	국토부 지침 개정	′18.下
	② 퇴직공제 납입액 인상 및 대상공사 확대	건고법 시행령 개정	′18.上
	③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세분화	건고법 시행규칙 개정	′18.上
(2)	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강화		
	① 근보증 도입 및 보증미가입 처벌강화	건산법 개정	'18.2 (법안제출)
	② 건설기계대여대금 지연이자제 도입	건설기계관리법 개정	'18.2 (법안제출)
	③ 1인 사업자 퇴직공제 가입특례 허용	건고법 개정	′18년중
(3)	설계·엔지니어링업계 일자리 질 개선		
	① 턴키・민자사업 불공정관행 개선	국토부 지침 등 개정	′18.1
	② 설계·엔지니어링 종심제 도입	국계법, 건진법 시행령 개정	′18.上
	숙련인력 확보		
(1)	기능인등급제 도입 ① 각종 경력정보 DB 일원화	통합방안 수립	′18 ~ ′19
	② 기능인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	건산법 등 관계법령	′20
(2)		개정	20
(2)	전자카드제를 통한 경력관리 기반구축 ① 300억원 이상 국토부 공사 선도시행	지침시달	′18.下
			′18.3
	②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의무화 등 확대	건고법 개정	(법안제출)
(3)	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 양성체계 확립	고용부 훈련비 지원계획 반영	′18 ~
(4)	불법외국인력 퇴출 및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	건산법 개정	'18.2 (법안제출)